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80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김승수 · 김선교 · 안철수
조승환 · 이현승 · 박성훈
강대식 · 김정재 · 김미애
조지연 · 고동진 · 강명구
최은석 · 김은혜 의원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이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위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음악영상물과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 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급분류)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2. ----- ----- -----, <단서 삭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

⑦ (생략)	<u>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음악영상물과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